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의안 번호	688
----------	-----

제출년월일 : 2001.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시 그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설치 완료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인수받아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음
- 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 주민들의 넘비현상으로 소각시설 가동지연 및 중단시 쓰레기처리 대란을 초래 할 뿐만아니라 엄청난 주민생활 불편등 환경오염 유발 우려와 유지관리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켜 개발권자로부터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받아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 포함 시행함으로서 환경오염 저감과 유지관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단지 또는 택지개발 지구별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 환경오염유발 우려 및 유지관리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켜 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설치하지 아니 할 때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였음(안 제3조).

나. 영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토록 하였음(안 제4조).

-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시설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명시

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설치하지 아니 할 때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 할 경우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였고, 납부금액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하여 개발권자의 부담을 덜도록 하였음(안 제4조).

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 하도록 하였음(안 제4조).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내지 제23조를 각각 제5조내지 제25조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 규정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로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영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을 곱한금액

2.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1일처리능력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단가에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 및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과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m'당단가에 매립대상량과 운영일수·사용년한을 곱한금액.

3. 폐기물 처리시설비 납부금액

구 분	산 출 기 초
부지매입비	○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소요면적(m')×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조성원가(m')
시설설치비	(소각시설) ○ 처리량 : 1인1일 폐기물발생량(0.74kg)×수용인구×가연성쓰레기량(54%) ○ 설치비 : 소각처리량×200톤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단가
	(매립시설) ○ 대상량 : 소각처리량×소각재 발생량(25%) ○ 설치비 : 매립대상량×운영일수×사용년한×매립용량 378,820m' 규모의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m'당 단가

②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는 당해사업의 착공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491
입 안 자	환경보호과장	박 철 순
	환경시설담당	박 용 준
	담 당 자	김 경 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 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 및 영제4조 규정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재환용되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 <신 설>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로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영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을 곱한금액 2.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1일처리능력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단가에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 활용 및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과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u>소요되는 비용의 m'당 단가에</u> <u>매립대상량과 운영일수 · 사용</u> <u>년한을 곱한금액.</u> <u>3. 폐기물 처리시설비 납부금액</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부지매입비</td><td> ○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소요면적(m')×공동주 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에 소요된 조성원가 (m')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시설설치비</td><td> (소각시설) ○ 처리량 : 1인1일 폐기물 발생량(0.74kg)×수용 인구×가연성쓰레기 량(54%) ○ 설치비 : 소각처리량× 200톤규모의 소각시 설을 설치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 (매립시설) ○ 대상량 : 소각처리량× 소각재발생량(25%) ○ 설치비 : 매립대상량× 운영일수×사용년한 ×매립용량378,820m' 규모의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m'당 단가 </td></tr> </table> <u>②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u>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u> <u>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u> <u>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u>	부지매입비	○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소요면적(m')×공동주 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에 소요된 조성원가 (m')	시설설치비	(소각시설) ○ 처리량 : 1인1일 폐기물 발생량(0.74kg)×수용 인구×가연성쓰레기 량(54%) ○ 설치비 : 소각처리량× 200톤규모의 소각시 설을 설치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 (매립시설) ○ 대상량 : 소각처리량× 소각재발생량(25%) ○ 설치비 : 매립대상량× 운영일수×사용년한 ×매립용량378,820m' 규모의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m'당 단가
부지매입비	○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소요면적(m')×공동주 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에 소요된 조성원가 (m')				
시설설치비	(소각시설) ○ 처리량 : 1인1일 폐기물 발생량(0.74kg)×수용 인구×가연성쓰레기 량(54%) ○ 설치비 : 소각처리량× 200톤규모의 소각시 설을 설치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 (매립시설) ○ 대상량 : 소각처리량× 소각재발생량(25%) ○ 설치비 : 매립대상량× 운영일수×사용년한 ×매립용량378,820m' 규모의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m'당 단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는 당해사업의 착공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u> <u>③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u> <u>④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